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9.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구분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명)	선발구분(명)			필기시험과목 (1차·2차 병합 실시)	비고
				일반	장애인	재능층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교육행정)	90	77	11	2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사서)	6	6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전산)	3	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시설(건축)	15	15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일반토목)	1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공업(일반전기)	5	5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기계)	3	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연구사	기록연구(기록관리)	3	3			1차: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2차: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소 계			126	113	11	2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시설(건축)	4	4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특하고(일반특고 이하) 마나고 졸업(졸업장)
		공업(일반전기)	2	2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기계)	1	1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운전(운전)	19	19			1차: 사회 2차: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소 계			26	26			
합 계			152	139	11	2		

※ 교육행정 및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점수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됨.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분·시험시간 20분·객관식 4지 택형 ·100점 만점]

■ 필기시험 과목 수 및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사서, 전산, 시설, 공업	기록연구	시설, 공업	운전
필기시험 과목 수	5과목	7과목	3과목	2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11:40)	140분 (10:00~12:20)	60분 (10:00~11:00)	40분 (10:00~10:40)

나. 제3차 시험: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1)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사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에 따라 기존 금지자산 또는 한정처분자산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면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력 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	1998.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 공업직렬)에 한하여 2001년 1월 ~ 2월생으로, 2018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응시가능

다. 성별: 제한 없습니다.

라.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 1) 아래 직렬(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응시에 필요한 학력·자격(면허)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급	사서	사서	▶ 1급·2급 정사서, 2급 준사서
		전산	전산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011.5.23. 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 까지 이수하여야 함)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시설	건축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건축(건축설비)
		공업	일반 전기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공업	일반 기계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운전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 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중 시설, 공업직렬은 강원도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1」 2018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포함)·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직렬의 경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3년간 없어야 합니다.**(관련 증명서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경찰민원포털(<https://minwon.police.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기록연구 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시설, 공업직렬 응시자는 거주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경우
 -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경우
-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기준지와 무관합니다.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교육행정 11명】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2)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첨부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 【교육행정 2명】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그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3) 저소득층 구분 선발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문제출제

가. 필기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은 공동출제위원회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대상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물리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공동출제위원회(17개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위탁출제 과목 문제 및 정답 가안은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018.3.26(월) 09:00 ~ 3.30(금) 18:00까지 【취소기간: 2018. 3. 31(토) 09:00 ~ 4.2(월) 18:00까지】	제1·2차	필기시험	2018.5.4(금)	2018.5.19(토)	2018.6.15(금)
	제3차	면접시험	2018.7.4(수)	2018.7.11(수)	2018.7.18(수)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등 관련사항 공고 방법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k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2018.3.26.(월) 09:00 ~ 3.30.(금) 18:00까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나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나. 취소기간: 2018.3.31.(토) 09:00 ~ 4.2.(월) 18:00까지 【취소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나 취소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접수방법

1)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kwe.go.kr>) 지방공무원 채용에 직접 접속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장애(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 및 접수 마지막 날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9급	5,000원	·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본인) 결제 ※ 결제 납부를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어 접수번호 확인 가능
연구사	7,000원	※ 취소기간내에 취소자에 한해 환불 가능하나, 취소 기간 후에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첨부 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환급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지막 날 까지며, 우편으로 청구 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24223)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격 및 용량: 가로 3.5cm×세로 4.5cm(140×180pixel), 9Kbyte 이상 100Kbyte 미만
- 확장자명: jpg 형식 파일만 가능
- 기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반명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캔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시험 당일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사진 파일 이름에 특수문자를 쓸 경우 등록 불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3)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4)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5)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6)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 공업직렬)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하시기 바라며, 미추천자가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7) PC 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1.0(32bit)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 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마. 응시표 출력

- 1)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됨으로 반드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2018.5.9.(수) 10:00부터 출력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내의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 방법: 【취업지원대상자 혹은 의사상자】+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산점 반영**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사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사무관리	9급·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 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은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이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

2) 직렬(직류)별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0], [별표11]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변호사	5%
시설(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5%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시설(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5%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5%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공업(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 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 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이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가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온라인채용시스템)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또는 5%)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3%)을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증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3) 자격증소지자의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최대 2개 인정)합니다.

4) 위의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의 가산특전), “다” (자격증소지자 가산특전)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위의 “나” 항과 “다” 항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5)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문제책의 과목순서는 시험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으며, 필기시험 시행 당일 공동출제과목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하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만 가능)**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스마트시계,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시험시간 도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답안지 기제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에는 소음방지용 귀마개, 모자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카.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타 시도 등으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행정정보/시험정보/임용시험/지방공무원 시험 게시판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kwe.go.kr>)에 공고합니다.

10. 2019년 지방공무원(운전직렬) 신규임용 시 달라지는 제도 안내

- 가. 학생의 안전 보호 및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운전 직렬 경력제한 강화
- 나. 적용시기: 2019년 신규임용시험부터
- 다. 적용사항: ①-1항 또는 ①-2항의 경우 한 개만 충족하면 됨

구분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사항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소지자
변경	①-1.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서,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거 승합대형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①-2.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서,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유치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유형별 세부기준의 승용, 승합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이상인 자

- 첨부 1. 2018년도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 학과 포함)·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3. 응시수수료 환급청구서